대학원 학칙 개정 (안)

1. 개정사유

대학원의 학사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칙 개정

2. 주요골자

- 1) 제4학기, 제5학기에 한해 최대수강학점의 조정(6학점->9학점)
- 2) 대학원위원회 인원 수정(7인->5인)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23조(이수학점) 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 공 24학점으로 한다. 단, 비동일계인 경우 선수	제23조(이수학점) ① <현행>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선수과목의 수강은 별도로 한다.	② 하며 제4학기, 제5학기에 한해 9학점까지 허용한다.(최소등록 학기 5학기)	자구 수정
제34조(성적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성적 4.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5.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제34조(성적의 불인정) <현행> 1. <현행> 2 (제4학기, 제5 학기 한해 9학점 인정) 3. <현행> 4. <현행> 5. <현행>	자구 수정
제51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u>5</u>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 장으로 한다. ③ <현행>	자구 수정

4.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안)

1. 개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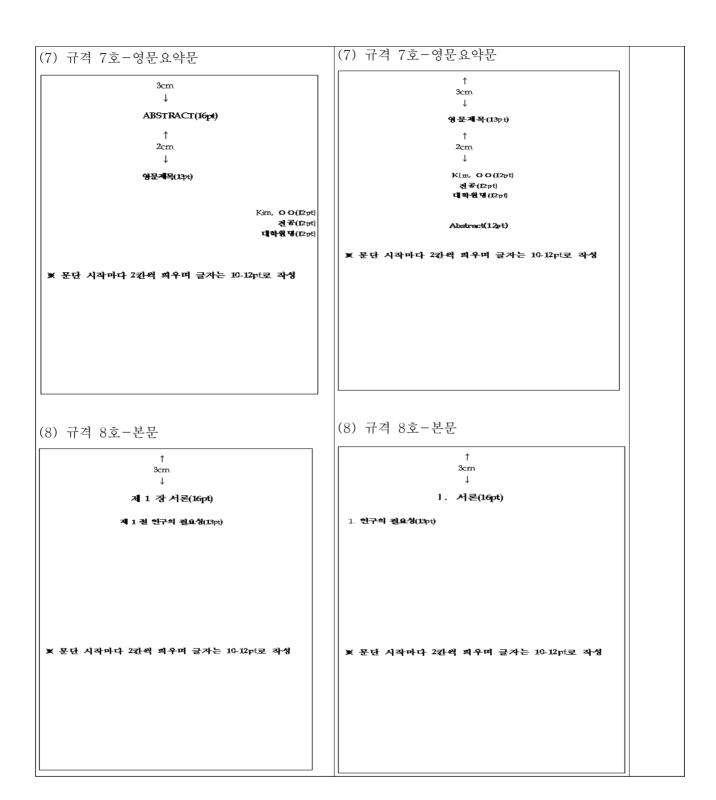
대학원의 학사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칙 개정

2. 주요골자

- 1) 학위논문규격의 명칭변경(차례->목차)
- 2) 【 별표1】대학원 논문 규격의 변경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44조(학위논문의 규격) 대학원의 석사학위	제44조(학위논문의 규격)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규격은 다음 각 호의 규격에 따른다.	논문규격은 다음 각 호의 규격에 따른다.	
1. 표 지 - 규격1호	1. 표 지 - 규격1호	
2. 책 등 - 규격2호	2. 책 등 - 규격2호	
3. 속표지 - 규격3호	3. 속표지 - 규격3호	
4. 인준서 - 규격4호	4. 인준서 - 규격4호	자구
5. <u>차 례</u> - 규격5호	5. <u>목 차</u> - 규격5호	기 I 수정
6. 국문요약문 - 규격6호	6. 국문요약문 - 규격6호	1 0
7. 영문요약문 - 규격7호	7. 영문요약문 — 규격7호	
8. 본 문 - 규격8호	8. 본 문 — 규격8호	
【별표1】대학원 논문 규격	【별표1】대학원 논문 규격	
(5) 규격 5호- <u>차례</u>	(5) 규격 5호- <u>목차</u>	
† 3cm	† 3cm	
↓	↓ ↓	
치 레(16pt)	목 차(16pt)	
제1장 서론	I . 서론	
제1절	1	
제2장 서론	II. 이론적 배경	자구
제1월	1	수정
		규격
		변경
■ 10-12pt로 작성하며, 자레의 구성은 논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 WWite 게이에다 서테니 I O는 근본에 따라 단경하게 사용	■ 10-12pt로 작성하며, 차례의 구성은 논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_		



4.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